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1902
-----------	------

2020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정진철 의원 외 9인

나.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는 충돌 발생 시 어린이의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등 본래

목적의 보호 성능이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반면에 3점식 안전띠는 3개의 지지점이 좌석에 고정돼 어깨와 허리, 복부를 감싸는 형태로 상체를 붙잡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음. 또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은 소형 통학버스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면충돌 시 2점식보다 3점식이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근거임

-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운행하도록 강조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용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개발을 촉진하고, 어린이차량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 3점식 좌석안전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운행 의무를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재정지원 기준 신설함(안 제15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간 : 2020. 10. 29. ~ 11. 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원안가결<sup>1)</sup>

-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이용 어린이의 연령과 용도가 다양함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 시 3점 식좌석안전띠 외에 연령에 맞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

- 제15조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 수용함

※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

1) 교통운영과-18004호(2020.11.20.)

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서울시 스쿨버스 운영 지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제정 추진 검토 필요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와 ‘3점식 좌석안전띠’를 정의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3점식 좌석안전띠 전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 개선시 서울시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관련)

- 「도로교통법」 제2조2)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유치원, 초등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3)에서는 안전띠의 성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와 ‘3점식 좌석안전띠’를 정의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 할 것임

## ■ 지원근거 마련의 적절성(안 제15조 관련)

- 2점식 좌석안전띠는 골반을 감싸는 방식으로 충격시 골반을 중심으로 상체에 큰 운동에너지가 쏠리면서 오히려 머리와 가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안전장치가 3점식 좌석안전띠이며<sup>4)</sup>, 3점식 좌석안전띠는 사고시 하체 뿐 만 상체도 고정되어 충격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구조적인 사유로 2점식 안전띠가 주로 설치<sup>5)</sup>되어 있어 중대교통사고시 어린이 피해를 감소시킬

3)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공식 블로그('19.9.3., 3점식 안전벨트 도입 60주년 “안전의 시작과 끝”)

- <https://blog.naver.com/autolog/221637389509>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수 있는 방안으로 3점식 안전띠 설치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에 따라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현재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임<sup>6)</sup>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적으로 0~2세는 바구니형(영아용) 카시트, 3~6세는 컨버터블(유아용) 카시트, 7~12세는 부스터(아동용) 카시트를 사용<sup>7)</sup>하므로 3점식 좌석안전띠는 7세 이상부터 사용이

---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6) 교통안전법 법률 제17445호, 일부개정 2020. 6. 9., 시행 2021. 1. 1.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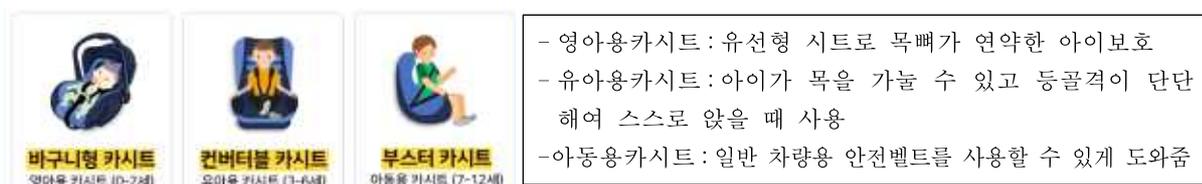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신설>

7)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공식 블로그('20.10.26., 우리 아이도 전좌석 안전띠!)

- <https://blog.naver.com/autolog/222124320590>

가능하고, 차종에 따라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재정지원시 3점식 좌석안전띠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보다 어린이의 연령 및 차종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교통안전장치 개선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개정되는 「교통안전법」 제9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하더라도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sup>8)</sup>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향후 관련 예산 지원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제15조</u>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u></p> <p>8. <u>“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u></p> <p><u>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u></p> <p><u>제16조</u> (현행 제15조와 같음)</p>